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책 임 운 영 기 관 의 설 치 · 운 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통계 관리업무를 전담할 인력 1명(7급)을 증원하고,

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(9급 1명), 국립목포병원에 진단검사 업무인력 1명(8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“336명”을 “337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“119명”을 “120명”으로 하며,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“98명”을 “9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35